



#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·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(EU)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「화장품법」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「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78호, 2014. 2. 12)을 개정 고시했다.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본다.

- 편집자 주 -

## 주요 내용

### 가.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문구 신설(별표)

1) 부틸파라벤, 프로필파라벤, 이소부틸파라벤,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·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'영·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(만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)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'에 대하여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신설

2) 위해평가 결과,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.

### 나.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 문구 조정(별표)

1)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등 12개 성분

##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시행규칙(총리령 제1322호) 부칙 제2조(화장품의 포장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3호는 시행규칙 시행일과 상관없이 본 개정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(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)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(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)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☐

(별표)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(제2조 관련)

연번	대상제품	표시 문구
1	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	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
2	벤잘코늄클로라이드,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	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
3	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(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에 한함)	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
4	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(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)	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
5	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	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
6	아이오도프로필부틸카바메이트(IPBC) 함유 제품(목욕용 제품,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)	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
7	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(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)	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, 약사, 한의사와 상의할 것
8	알부틴 2% 이상 함유 제품	알부틴은 「인체적용시험자료」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
9	카민 함유 제품	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
10	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	코치닐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
11	포름알데하이드 0.05% 이상 검출된 제품	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
12	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.2% 이상 함유 제품	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「인체적용 시험자료」에서 경미한 발적, 피부건조, 화끈감, 가려움,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
13	부틸파라벤, 프로필파라벤, 이소부틸파라벤,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(영·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(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)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함)	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